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0. 23.
도시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김장관 의원 등 5명(도하석, 김정희, 남현주, 임미연)

○ **발의일자**: 2025. 10. 2.

○ **회부일자**: 2025. 10. 10.

○ **상정 및 의결**: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 10. 23.)

2. 제안이유

○ 법령상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문언을 정비하고 행정부의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과 자치법규간 통일성 확보 및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 대상 및 위임받은 자가 매각할 경우의 승인 주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3조)

○ 제명 변경 및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함(안 제28조제5항제3호, 제38조제1항제5호)

○ 장애인 관련 용어 등 문언을 정비함(안 제56조, 별표 제4호)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정부조직법」 제26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5. 10. 10.~10. 21.):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최윤미)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부의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의 반영 및 장애인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현행 조례에 미반영된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의 위임대상을 재산관리관으로 반영하고
- 안 제3조제2항에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매각 시 매각 승인 주체를 '구청장'에서 공유재산 업무 총괄책임자인 '총괄재산관리관'으로 변경하여 공유재산 업무의 적정성 확보와 책임성을 강화함.
- 안 제28조와 안 제38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제명 변경과 행정부의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안 제56조와 안 별표는 중복의미의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용어를 정비함.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정확성과 행정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재산인 달서구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